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67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정액지급 규정 마련 및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등을 마련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지급대상 : 중·고·대 통장 자녀 1인
- 지급규정 : 정액 지급으로 변경

· 예산의 범위 내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

나.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 자격기준

  · 학업우수: 자녀 중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

  · 특기: 자녀 중 기능·예·체능에 재능이 있는 자

  · 직전학기 수혜자 지급제외

- 선발기준 : 자녀 학업성적 또는 특기 점수 등을 항목별 배점제를 적용하여 순위 조정

- 추천 : 학기별 추천 및 선정

다.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차감하고 지급

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민간단체 장학금 지급제외 사유 외 별도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동정부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동정부과, 전화 : 02-3396-4563, 팩스 : 02-3396-8612, email : lime98@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학업우수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금의 자격) ① 장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우수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직전학기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기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고·대학생 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6조(장학생 정원)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의 15%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교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당해 이전학기)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 분야	중·고등학생	5등급(중학생은 C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80%이상	70%이상 80% 미만	60%이상 70% 미만	50%이상 60% 미만	40%이상 50% 미만
	대학생	전과목 평점평균				
		상위20%이내	상위20%초과 30%이내	상위30%초과 40%이내	상위40%초과 50%이내	상위50%초과 60%이내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50	40	30	20	10

나.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시장	구청장
점 수	10	9	8	7

3.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